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1. 머리말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유명무실화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정도가 가장 심했던 5공화국 당시에는 “우리 헌법의 기본권체계는 허구의 체계이다”라는 말이 가장 적실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87년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그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는 현행 헌법이 과거의 헌법보다 유독 내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신체의 자유를 좀 더 강조해서 보장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 등이 과거 헌법에 비해서

나아진 내용이지 무슨 획기적인 내용들이 더 첨가된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과거 헌법보다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헌법의 현실이 바뀌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 군사정권의 독재를 일단 제어한 다음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의 것이라도 현행 헌법은 과거의 헌법에 비해서 법으로서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현행 헌법은 93년도 새롭게 출범하는 문민정부와 함께 더욱더 그 발전이 기대되었다. 헌법의 실현을 그 집행단계에서 차단시켜오던 불법적인 사실력과 하위입법들을 정상적으로 개혁하게 되면 헌법을 무능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많은 제약들이 풀림으로써 이제 얼마든지 규범적인 헌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듯이 전문성과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외양은 호사스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으나, 정작 헌법의 기능은 그 이전에 비해서 발전적으로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국가보안법이나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헌법 현실이 이에 해당한다.

더구나 일부분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욱 정책적 배려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야는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의 영역이다. 현 정부는 당장 눈앞에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힘든 그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흐름에 비추어 보면 장기적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학문과 문화와 교육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답보하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도 자연스레 이해가 된다.

실제로 경제성장의 논리에 밀려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 대한 배려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국정감사에서도 교육행정분야에서는 한결 같이 전에 비하여 발전보다는 후퇴의 경향이 심하였다는 것이 자료로써 제시되었던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육환경개선, 교원처우개선, 전인교육강화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것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 속에서, 이하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어보기로 한다.

2. 학문의 자유

1) 의의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문이라 함은 자연과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관한 법칙 또는 진리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는 학문적 활동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일차적으로 가진다.

학문의 자유가 헌법의 차원에서 보장된 것은 독일 3월 혁명의 성과로 얻어진 1849년의 프랑크푸르트헌법과 1867년의 오스트리아헌법에서부터라고 알려진다. 이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데에는 이전부터 많은 사상가들이 당시의 정부의 탄압과 맞서 자신들의 생각과 학문적 주장을 견지하는 투쟁들이 쌓여 마침내 법적 차원으로 승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모든 고전적 자유권이라 할지라도 현대에 와서는 현대적 기본권들과 종체적 관계를 분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에서도 가급적 사회권적 기본권이 가지는 적극적 성격을 찾아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에 관한 지원이나 급부를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때만이 그 규모면에서 거대하고 시간적으로 급변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학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연구진흥책이나 학문 연구환경을 개선할 의무를 지고, 비단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한정짓지 말고 국가권력 전반에 걸쳐 이를 위한 지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컨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에서도 새정부 들어서 실시하겠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와 한가지로 국민들의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국가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사회 제 분야에서도 학문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자료와 재정지원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회가 현 단계에서는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방식은 우리 헌법이 지도원리의 하나로 목표를 두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라는 견지에서 학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제도적 보장은 앞으로 살펴볼 대학의 자치제 보장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게 된다.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우선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자유와 강학의 자유를 포함한다. 연구와 강학이 자유롭지 못하면 학문의 최소한도 유지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외에도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공동적 학문의 수행을 위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1992년 11월 12일의 헌법재판

소 결정에서도 이 점은 인정되고 있다. 즉,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대학의 교수의 자유와 구별하여 편의상 이를 수업의 자유로 한다)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진리 탐구의 자유와 결과발표 내지 수업의 자유는 같은 차원에서 거론하기가 어려우며, 전자는 신앙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처럼 절대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라는 언급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① 연구의 자유

연구의 자유는 성격상 신앙이나 양심의 자유에 준하므로 유보없이 보장되는 자유로 이해된다.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가 말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 부분이 침해되면 학문의 자유는 파괴되는 것이다.

②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연구의 자유는 그 외연상 연구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의 발표는 대학의 강의실 이외의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또는 저서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통해서 한 연구자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비판과 검토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나라와 사회의 문화수준 결정에 기여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보장이 당연히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연구결과도 외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학이 지배하였던 중세기에서 많은 일화가

말해 주듯이 당시에는 자연과학의 연구결과도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자연과학의 주장이 지배적인 논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위험 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결과는 자연과학의 승리와 중세의 몰락으로 끝났다. 그런데 자연과학보다는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이런 정치적 탄압은 훨씬 심한 역사를 가졌다 고 볼 수 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떤 지배 자도 자신의 생각과 통치이념과 다른 생각을 탐탁하게 받아들였을 리는 만무한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극도로 억 압되었다. 후세에 고전으로 남은 명저들이 당시대에 금서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적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증명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달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경쟁하고 대비되는 가운데 발전이 있는 것임을 기본 적인 믿음으로 삼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를 법 적으로 제도화시키는 데까지 성공하였던 것이다.

물론 연구결과의 발표는 타인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자유의 제한이 따를 수 있는데,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

③ 강학의 자유

강학의 자유는 연구결과를 대학의 강의실에 서 전달하는 자유이다. 이를 ‘교수의 자유’ (Lehrfreiheit)라고 부른다. 교수의 자유는 위에서 말한 ‘수업의 자유’와 구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교사에게 부여된 ‘수업의 자유’는 자신이 연구 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회에서 보고하거나 학술지

에 기고하거나 스스로 저술하여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들에게 여파없이 전파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상규나 윤리도덕을 일탈할 수 없으며, 가치편향적이거나 반도덕적인 내용의 교육 은 할 수 없다고 본다(헌법재판소 결정 1992. 11.12 <89 헌마 88>).

강학의 자유는 특히 강학의 내용이나 방법론 또는 학술적 견해의 표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강학내용이나 강학방법에 관한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의실에서는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다(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1994, 법문사, 542~543쪽).

3. 대학의 자율성

1) 의의

대학의 자율성이라 함은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 으로 행하고 그것을 전파하거나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집단과 학생집단이 잘 관리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이 바로 대학인 것이고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서 운영하게 하자는 것이 대학의 자치 혹은 자율인 것이다.

자치 내지 자율(autonomy)은 본래 일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 결정권을 가짐

을 뜻한다.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성도 그런 방향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보다 더 자세히 말해서 무엇에 대한 누구의 결정권이냐라는 결정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히 될 것을 요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추출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2) 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한다. 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 교육기관—따라서 대학에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대학에서만큼은 별도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교육의 자주성 일반보다도 특별히 더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권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학문의 자유의 내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학문의 자유는 결국 학문기관의 자유까지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특히 대학의 자유로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학이 무엇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분분해진다. 질문을 바꾸어서 교수의 본래적 임무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어떤 이는 연구기능이라 답하고, 어떤 이는 그래도 교육자로서의 기능이 조금 더 크지 않겠느냐고 대답하는 등 그 논란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대학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학문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교육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의 일종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그리고 교수)의 임무는 연구자와 교육자의 임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이 교육자치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하겠다는 이 규정은 실제에서는 별로 실효성을 갖고 있지 않다. 우선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이나 기타의 교육관계법을 보더라도 이런 정신이 특별히 반영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대학에 대한 배려나 의미부여 같은 것이 박약한 형편이다. 이런 교육의 황폐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민주화운동, 특히 전교조운동이 전개된 사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교조를 통하여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전 사회에 폭로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일대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정작 법적 차원에서 얻은 변화란 고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과 같은 유명무실한 법제정에 그쳤다.

이렇듯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법률에 의해서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은 결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학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을 통해 보장하되, 대학의 자

율성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제도는 법률에 의해서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률이 없다고 해서 대학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자율성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헌법의 형성이 없더라도 자율성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의 원리로부터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마치 법률이 정하는 만큼만 보장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키는 현재의 헌법규정은 시정되어야 할 듯하다. 가정이나 교회, 대학, 지방자치와 같은 근대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제도들에 대해서 서양의 법제들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한 간섭을 가급적 삼가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원칙적으로 자율을 보장하고, 그들 제도들은 나름대로의 전통과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가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은 그런 전통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에도 없는 규정들을 법으로 만든 바도 없다. 전통도 서있지 않고, 법의 규정도 없는 가운데 국가의 공권력은 대학의 역내를 거침없이 침범한 것이 우리의 과거사이다. 대학의 자율성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확립해 갈 것인가를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강구해야만 한다.

3) 내용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대학의 자치는 첫째로 대학 인사에 관한 자치 내지 자주결정권, 둘째로 대학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자주결정권, 셋째로 대학 학사관리에

관한 자주결정권을 뜻한다. 오랜 동안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이 대학의 외부의 결정에 의해서 시달려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가공권력의 외풍에 의해서,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설립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대학의 운영이 좌지우지 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1년 개정된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종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재단의 대학에 대한 영향력과 개입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할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자율성에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마당에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수준을 어느 정도에서 결정하느냐가 또한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대학의 자율성일반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벅찬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수의 지위와 관련한 자율성 논의에만 국한시키기로 하겠다.

4) 교수의 법적 지위

헌법에서나 교육법을 통하여 일반교원과 구별되는 교수의 지위규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다만, 정당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그 시행령에서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13조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몰각된 현실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육민주화운동이 벌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임시방편으로

제정된 법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 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교원의 사회적 권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범인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를 해석하면, 이 법에서 정한 교원지위향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대학의 교원지위는 자율성 확보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수준일까? 이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보장과 국회의원에 관한 특권인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관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05조 제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어느 정도 지침이 될 만하다. 물론 교수가 국가기관이 아닌 이상 탄핵규정과 같은 것은 전혀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에 상당하는 신분보장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이 문화 국가의 원리를 지향하고 동시에 그동안 군부정치로 문화의 영역이 형편없이 피폐화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

은 너무 정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현실의 대학과 교수의 형편을 보면 이런 것을 단번에 실현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이 처한 역경을 시정시키고자 하는 지원과 협조가 수반되면서 이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특권으로서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발언상의 면책특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개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특권이 주어짐으로써 교수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다.

5) 대학의 자율성과 경찰권

도시의 공기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도시의 공기를 자유롭게 하는 온상은 대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대학의 분위기는 외부의 공권력과 곧잘 마찰을 빚어왔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는 경찰권과의 관계설정이 그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학의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이 경찰권력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면, 창조적인 대학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당할 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권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꼭 필요하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내에서의 경찰권 행사에 관하여 대학이 자주적인 가택권과 질서유지권 및 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1994, 법문사, 295~296쪽).

이와 관련해서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 학교법’ 제60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4조는 똑같이 ‘교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교원들이 일반 공무원이나 다른 직원에 비해서 갖는 특별한 권리임에 분명하다. 이런 규정이 별다른 이의없이 교육관계법에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교육과 교육자에 대한 일정한 신분보장을 한다는 정신이 아직도 이 사회의 기본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자율적 보장들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이 명목화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교권 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상식을 기초로 해서 교육과 대학의 자율성의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4. 대학과 교수에 행해진 최근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평가

1) 경상대 사건

① 이미 4년여 동안 강의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새삼스럽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삼은 것은 학문(연구와 강학의 자유), 사상, 출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

② 더욱이 검찰이 해당강좌의 리포트와 시험 답안지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후맥락으로 볼 때, 학사관리에 관한 자주결정권이라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③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강좌를 폐강조치시킨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지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유초하 교수 사건

① 충북대 유초하 교수의 경우 수사 내용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방법이 헌법이 정한 대학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유 교수의 연령이나 경력, 평소활동을 보면 긴급구속의 이유가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민청이라는 한 조직에 드나든 혼적이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인신구속을 시도한 것은 과잉된 공권력 사용임에 틀림없다.

② 개강을 맞는 시점에서 구태여 교수에 대한 인신구속의 수단을 선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요건에도 위배되며, 이미 말했듯이 교원일반에 대한 불체포특권의 정신에도 반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학기중 교수에 대한 체포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것처럼 대단히 신중을 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④ 학기중에 교수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받아야 할 학습권의 침해는 또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대학과 교수, 교육부, 아니면 수사기관 중 어느 곳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3) 정현백 교수 등에 대한 긴급구속

지난 10월 6일 안기부에 의해서 두 교수가 긴급구속되었다가 이를 후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 사이에 언론의 횡포를 통해서 당한 교수의 인권피해는 심각한 것이었다.

이 사건도 이미 케케묵은 과거의 일을 연관

시켜 조사를 평계로 진급구속을 한 일이었다. 그런데 구속의 시점은 학기중에, 그것도 심야를 택했다. 누가 봐도 긴급한 사건으로 착각케 하는 일이었으나 무혐의로 끝났다. 아무리 자택에서의 연행이라도 학기중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는 당연히 대학 총장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된 가택권의 실질적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4) 조선대에 대한 학내사찰

경찰에 의한 대학 및 교수에 대한 감시는 근본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5. 결 론

이제껏 말했듯이 국민에게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꽂피우는 온상인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이 사회에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대학의 권위 추락은 곧 우리 사회의 문화수준이 얼마나 저열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너진 대학의 권위는 이제 회복되어야 한다. 연구실적으로나 연구환경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지만, 우리의

대학이 항상 자기비하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대학에 주어져야 할 본래적인 권리들은 하루빨리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의 주체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동시에 이제까지 대학의 자율을 경시하고 쉽사리 침범해온 국가권력의 자세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 나라의 법치주의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안기부나 검찰 등의 권위가 존중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이유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안정에 있는 것 이지 권력남용을 통한 헌법질서의 침해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은 문화국가를 지도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의 귀중한 이념과 질서라는 점이 특별히 기억될 것이 요청된다. ■

강경선/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법사상사』, 『법과 사회』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해석과 변혁”, “국가 권력과 종교” 외 다수를 발표했다.